

보 상 계 획 공 고

2024년 4월 26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



부산지방국토관리청(소관: 대구국토관리사무소)에서 시행하는 『국도30호선 성주 벽진 가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공사명 : 국도30호선 성주 벽진 가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
- 사업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- 사업개요 : 도로확폭·교차로 개선 등 기존도로 개량, L= 3.8km
- 사업기간 : 2022. 7. 22. ~ 2025. 7. 5.
- 사업구간 :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가암리, 성주읍 용산리 일원
- 보상대상 :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 권리일체
 - ※ 토지조서 등의 세부 내용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.
(개별 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)
 - ※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면적, 지번 등은 지적분할 및 설계증감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
- 열람방법 : 보상대상 토지조서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성주군청에 게재하고,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
 - 홈페이지 주소: <http://www.molit.go.kr/broc/> → 대구국토관리사무소 → 공지사항
- 보상시기 : 2024년 6월 이후 보상 예정
- 보상방법 및 절차(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보상금 산정)
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.
 -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.(단,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음)
 -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.

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】

토지소재지	편입지번	편입면적 (㎡)	토지소유자		인감날인	전화번호 (주택 또는 휴대폰)	비고
			성명	주소			

※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 단,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- 열람기간 : 2024. 4. 26. ~ 2024. 5. 10.
- 의견제출장소 :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(☎ 053-605-6027)
(주소 :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길 54). 끝.